경기도 복지발전소 경기복지재단

vol. 88

ISSN 2508-593x

G-Welfare Weekly Report

경기복지재단 |발행인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양복완 |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150 신관3층 |031-267-9368 |http://ggwf.gg.go.kr | 2017.01.26.

01 중앙정부 정책동향

1. 정부, 건강보험 부과체계 소득 중심으로 개편

01 주요 내용

-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 소득추정방식, 피부양자,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등 직장-지역 간 건강보험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의 단계적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안을 공청회(1월 23일)를 통해 발표
  - (지역가입자) 평가소득(성·연령, 소득, 재산, 자동차), 재산,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는 17년 전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, 재산과 자동차는 이중 부과의 문제가 제기
  - (피부양자)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이 느슨하여 건보료를 납부하기에 충분한 소득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문제 발생
  - (직장가입자) 보수 외 고액의 이자·배당·임대소득이 있어도 연간 7,200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아, 7,200만원 기준으로 보험료 절벽현상*이 발생
  - 보건복지부는 '소득일원화 개편'에 대해서는 공감하나, 소득 파악·부과 기준의 상이성 등을 이유로 소득파악과 연계하여 소득 보험료 비중을 높이는 단계적 개편안을 채택
  - 정부는 개편안을 통해 지역가입자 606만 세대(80%)가 월 평균 4.6만원(50%)의 보험료 인하 혜택이 있을 것으로 전망

*보수 외 소득이 7,200만원 이하이면 보험료 0원, 7,201만원인 경우 월 18만원 보험료 부과」

[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 주요 내용]

○기본방향
-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
- 소득 파악과 연계, 소득 비중을 높이는 3단계 개편 추진
  *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비중 : (현행) 30% → (3단계) 60% (⬆2배)
  * 전체 소득 보험료 비중 : (현행) 87% → (3단계) 95%

○지역가입자
- 성연령 등에도 부과하는 「평가소득」 보험료 17년만에 폐지, 최저보험료 기준 적용
  * 예로 송파 세 모녀의 경우 월 4.8만원 → 1.3만원으로 감소(1,2단계) 후 1.7만원(3단계)
- 재산·자동차 부과 단계적 축소
  * 재산: 시가 1억원 이하, 1억 7천 이하 전세는 보험료 미부과(3단계)
  * 자동차: (1단계) 1,600cc이하 소형차 폐지 → (3단계) 4천만원 이상에만 부과
- 지역가입자 80%, 보험료 △50% 인하(3단계)
  * (1단계) 583만 세대, △2만원/월 → (3단계) 606만 세대, △4.6만원/월

○피부양자
- 高소득高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
  * 소득: (현행) 연소득 최대 1.2억→ (1단계) 3,400만→ (3단계) 2,000만원 초과
  * 재산: (현행) 과표 9억→ (1단계)5.4억→ (3단계)3.6억 & 연소득 1천만원 초과

○직장가입자
- 월급 外 고소득 직장인, 단계적 부과 확대
  * (현행) 연 7,200만원 → (1단계) 3,400만원 → (3단계) 2,000만원 초과
- 대다수 직장인 보험료는 변동 없음 (1단계 99% → 3단계 98%)

- 그러나 야당에서는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안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속도가 더디다는 점과 구체적인 실천방향에서 이견을 보이며 반대를 표명
  - 야당은 지난 총선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정당별로 발표하였고, 더불어민주당은 공청회 및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의하였음
  - 야당(안)은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'소득 중심 단일화 체계'를 지향하고 있어, 정부안과 충돌이 예상되며, 2년 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제안한 개편안보다 후퇴하였다고 비판

〈표〉 건강보험 부과체계 정부안과 야 3당 안 비교

	정부안	민주당	국민의당	정의당
보험료율	6.12%	6.12%	5.185%	4.87%
최저보험료	17,120원(3단계)	3,590원	3,204원	8,560원
피부양자자격	연소득 2,000만원 이하(3단계)	폐지	폐지	연소득 336만원 이하
일용근로소득	미부과	부과	부과	부과
보수 외 소득 보험료 부과	연소득 2,000만원 초과(3단계)	0원 초과	0원 초과	0원초과

  - 전문가들도 공청회에서 정부안에 대하여 부과체계의 복잡성, 3년 주기 3단계 개편안의 현실성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적 입장을 견지*
    - 김재진(조세연구원)은 현행 부과체계가 너무 복잡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, 소득을 중심으로 단순화해야 함에도 3단계를 거쳐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잔존함을 지적
    - 김진현(경실련)정부의 3년 주기 3단계 개편안은 현실적으로 제도를 3번이나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3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지적

*경향신문(2017. 1. 23). 「건보 개편안, 이쪽저쪽 눈치보다 맹탕」

02 경기도 시사점

-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조례로 시행중인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의 개편이 필요
  -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18개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,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지원금액, 대상자 등의 조례 개정이 필요
  - 또한 송파 세모녀 등 유사사례 방지와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지원조례가 있는 18개 시군의 경우 대상자 선별 기준을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,
  -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13개 시군의 경우 신속한 조례제정을 통해 건강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**

〈표〉 도내 시군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현황

시군	조례 유무	시군	조례 유무	시군	조례 유무	시군	조례 유무
가평군	X	남양주시	X	안양시	O	의정부시	O
고양시	X	동두천시	X	양주시	X	이천시	X
과천시	X	부천시	O	양평군	O	파주시	O
광명시	O	성남시	O	여주시	O	평택시	X
광주시	O	수원시	X	연천군	X	포천시	X
구리시	O	시흥시	X	오산시	O	하남시	O
군포시	O	안산시	O	용인시	X	화성시	O
김포시	O	안성시	O	의왕시	O	총 18개 시군 시행	

  - 경기도는 기 시행중인 「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」 조례 개정을 통해 대상자의 확대 및 시군의 재정부담을 고려한 분담비율의 조정방안을 적극 추진
    - 「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21조에 의거 저소득 노인으로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으며, 도비 보조비율은 10%~90%(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 적용)로 규정하고 있으나,
    - 도민의 기본적 의료혜택임을 감안하여 대상자의 확대 및 도비/시군비 균등 부담으로 개정 필요
    - 참고로 경상북도의 경우 「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」 조례를 통해 대상자를 저소득층 전체로 하고 있으며, 도비/시군비 분담비율은 1:1로 규정

**서울시의 경우 광역차원에서의 조례와 25개 자치구 모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

2.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개정(이재용방지법) 입법 발의

01 주요 내용

-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개정을 담은 일명 '이재용 방지법'이 지난 2017년 1월 12일 입법 발의
-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(이재용방지법)이 제안된 배경
  -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다는 문제제기가 있고,
  - 이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액은 적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을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,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적정비율 1:0.46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손해액은 약 3,400억원에 달함*
  -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운용의사결정에 사회적 책임투자를 의무화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운용결정의 중심에 서도록 역할을 명확히 하여 운용의 독립성과 수탁자 중심의 운용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개정안이 입법발의(제윤경의원 등 13일)되어 현재 위원회 심사 중에 있음*
-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**
  -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기금운용의 목표를 수익자 이익 극대화(제102조제2항 중 "그 수익"을 "가입자의 이익"으로 변경)
  - 투자대상과 관련한 사회 · 경제 ·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(제102조제4항 중 "투자대상 및 투자방법과 관련한 환경 · 사회 ·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. 이 경우 투자 판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공개하여야 한다"로 변경)
  -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기금운용 회의소집권과 안건제안권을 위원에게도 부여(제103조제1항제5호 및 제4항 중 "위원장 또는 위원"로 변경)
-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절차에서 무엇이 문제였나?
  - 이렇게 국민연금에게 큰 손해가 예상되는 결정을 국민연금공단에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절차가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. 즉, 국민연금공단은 의결권 행사 절차에 있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'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'를 개최하지 않고, 내부 직원들로만 구성된 '투자위원회'에서 합병찬성을 결정***
  - 실제 2015년 6월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일부 민간위원이 합병에 대해서 주식의결권전문위원회에 요청해 달라고 건의하였으나,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****
  -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난 3년간 사실상 유병무실하게 운영(2016년 총 3,018개 안건 중 0건, 2015년 2,836개 안건 중 2건, 2014년 2,775개 안건 중 2건만이 주식의결권전문위원회에서 심의)(Yakup, 2016.12.23.)

02 시사점

- 늦었지만 의결권 절차를 보다 투명하도록 강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
  - 부적절한 의결권 행사 절차로 인해 국민 노후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입게 되었으나, 뒤늦게 나마 의결권 행사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개정하도록 하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
- 국민노후자금인 국민연금 운영 · 관리를 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게 보다 강력한 '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'*****를 하도록 법률 개정 필요
  -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강제하여 국민연금을 개인 쌈지돈처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

*뉴시스(2017. 1. 8.), 채이배, 이재용배상법 대표발의

**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

***Yakup(2016.12.23.),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절차 투명화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

****MTN(2017.1.17.), 민간위원도 최고회의 소집가능

*****민법(民法) : 민법상의 주의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원칙적인 것으로 하고, 법인(法人)의 이사(理事)(민법 제61조), 유치권자(留置權者)(동법 제324조), 질권자(質權者)(동법 제343조), 특정물의 매도인(賣渡人)(동법 제374조), 수임인(受任人)(동법 제681조), 후견인(後見人)(동법 제956조 등)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음

02 시·도/시·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

1. 65세 이상 인구, 15세 미만 인구 첫 추월

지난해 12월 말,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가 15세 미만 인구를 최초로 추월하였으며, 이를 전국 시도별 인구통계를 통해 지역별로 비교

-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노인인구(만65세 이상)가 유소년인구(만15세 미만)를 최초로 추월*
  - 만65세 이상 인구가 6,995,652명(전체 인구의 13.5%)으로 '15년 말에 비해 3.26% 증가한 반면 만15세 미만 인구는 6,916,147명(전체 인구의 13.4%)으로 2.06% 감소
  - '08년에는 만15세 미만 인구 비중이 17.2%로 만65세 이상 인구 비중(10.2%)과 차이가 컸으나, 불과 8년 만에 인구 역전현상 발생

*행정지치부, 「주민등록 인구통계(2016년 12월 말 기준)」

- 노인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많아지는 인구학적 전환점은 출산율 감소와 수명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계적 현상**
  - 50년 전 노인 1인당 유소년 수는 7명 이상으로 유소년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이 당연하였으나, 현재 비율은 1대 30이며 향후 60년 내에 세계 전체적으로 역전될 것으로 예측
  - 이러한 역전현상은 지난 1995년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발생된 데 이어 2000년대 일본 · 독일 · 스페인 등에서 발생하였고, 우리나라는 예상시점인 2020년에 비해 3년 앞서 발생

**조지프 차미(前 유엔 인구국장)

- 한편 전국 시도별로는 서울을 비롯한 10곳에서 인구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, 경기를 비롯한 7곳은 아직까지 노인인구보다 유소년인구가 많음
  - '16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노인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많은 지역은 총 10곳이며, 전남 · 경북 · 강원 · 전북 · 부산 · 충남 · 충북 · 서울 · 대구 · 경남 순임
  - 유소년인구가 노인인구보다 많은 지역은 세종 · 울산 · 경기 · 광주 · 대전 · 인천 · 제주 등 7곳이며, 경기도는 유소년인구 188.6만 · 노인인구 137.4만임

〈표〉 시도별 노인인구 및 유소년인구 현황 및 노령화지수

(단위 : 명, %)

지 역	만15세 미만		만65세 이상		노령화지수	지 역	만15세 미만		만65세 이상		노령화지수
	인구	비중	인구	비중			인구	비중	인구	비중	
전 국	6,916,147	13.4	6,995,652	13.5	101.1	경 기	1,885,849	14.8	1,374,475	10.8	72.9
서 울	1,157,100	11.7	1,295,899	13.0	112.0	강 원	190,309	12.3	266,152	17.2	139.9
부 산	401,980	11.5	536,064	15.3	133.4	충 북	214,519	13.5	240,690	15.1	112.2
대 구	321,085	12.9	328,901	13.2	102.4	충 남	294,793	14.1	350,108	16.7	118.8
인 천	403,683	13.7	324,255	11.0	80.3	전 북	245,140	13.1	341,203	18.3	139.2
광 주	219,773	15.0	172,572	11.7	78.5	전 남	239,499	12.6	398,916	21.0	166.6
대 전	217,638	14.4	171,568	11.3	78.8	경 북	333,025	12.3	492,417	18.2	147.9
울 산	171,276	14.6	108,768	9.3	63.5	경 남	472,774	14.0	480,278	14.2	101.6
세 종	49,587	20.4	24,197	10.0	48.8	제 주	98,117	15.3	89,189	13.9	90.9

- 노령화지수***는 통상적으로 30이 넘어가면 노령화사회로 분류되는데, 우리나라는 이미 '98년에 노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, 현재는 노령화지수가 100을 초과(101.1)
  - 경기도 노령화지수는 72.9로 전년도에 비해 3.7p 상승하였으나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편임
  - 노령화지수가 가장 낮은 곳은 세종(48.8) · 가장 높은 곳은 전남(166.6)으로, 두 지역 간 노령화지수 격차가 117.8p로 상당히 크게 나타남

***유소년인구 100명당 노인인구

2. 재단 주요행사 안내

행사명	주요내용
경기도 균형발전 기준선 도민 토론회	• 일 시 : 2017. 2. 13.(월) 15:00 • 장 소 :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 • 내 용 : 영역별 복지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발표 및 토론 • 참 석 : 경기도민 · 현장 · 지역사회보장협의체 · 공무원 등 200명

03 FACT CHECK

노인빈곤율 61.7%? vs. 46.9%?

- 우리나라 노인빈곤율, 연합뉴스 "61.7%"('17.1.17.), 통계청 "46.9%"('16.12.20.)
  - 통계청이 지난해 말 「가계금융복지조사」 결과를 토대로 보도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6.9%이며, 동일한 자료로 연합뉴스가 지난 17일 보도한 노인빈곤율은 61.7%로 큰 차이
- 왜 동일한 자료로 분석한 노인빈곤율이 각각 61.7%, 46.9%로 차이가 나타났는가?
  - 통계청이 추정한 노인빈곤율(46.9%)은 소득기준을 처분가능소득*으로, 연합뉴스에서 추정한 노인빈곤율(61.7%)은 시장소득**으로 설정하면서 이 같은 차이 발생
  - 쉽게 말해, 가처분소득은 개인소득 가운데 소비 또는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하는 반면에 시장소득은 일을 하거나 재산을 통해 얻은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,
  -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은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통계수치가 다르게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
  - 주택이나 농지를 포함하면 노인빈곤율이 낮아진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으나 실제 빈곤효과를 감소시키는 데는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(기초연금수급자 435만 명 중 주택보유자는 168만 명에 불과하고 주택재산가액이 1억 6,800만원 이하인 경우가 89.2% 차지)***
- 중요한 것은 숫자의 다름이 아니라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로 공적 지원 확대가 필요
  - OECD, UN 등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계산방식은 처분가능소득(disposal income)이므로 통계청에서 계산한 방식에는 무리가 없어 보임
  - 다만, 시장소득으로 계산할 경우 노인빈곤율이 더욱 높아지는 것은 우리나라 노인의 부동산 등 재산으로 인한 소득이 매우 적음을 확인한 것으로 기초연금과 같은 공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

*가처분소득(처분가능소득) : 시장소득+공적이전소득(국민, 기초연금 등)-공적지출(소득세, 사회보험료 등)

**시장소득: 근로소득+사업소득+재산소득+사적 이전

***이재훈(2015). "한국의 노인 왜 빈곤한가-국제비교로 본 우리나라 노후빈곤실태"

04 통계로 보는 복지

인구 노령화 추이(전국, 경기도)

전국 연령별 인구비중 및 노령화지수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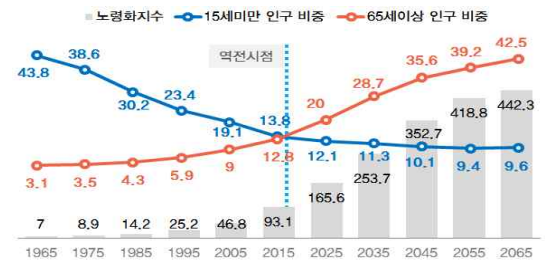

경기도 연령별 인구비중 및 노령화지수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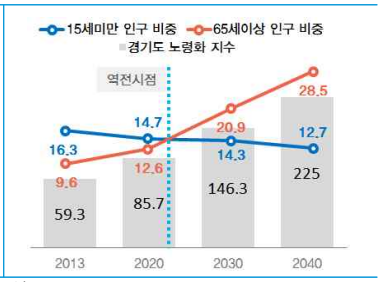

자료 : 통계청 장래인구추계(2015~2065), 장래인구추계 시도편(2013~2040)*

(단위 : %)

*중위추계 값 기준

-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노령화지수는 '65년 7에서 '15년 93.1로 13.3배 상승하였으며, 50년 후인 2065년이면 노령화지수가 442.3에 이를 것으로 전망
  - 이는 곧 2065년이 되면 0-14세 유소년인구 100명당 노인인구가 442.3명에 이른다는 뜻임
-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5세 미만 유소년인구를 앞지르게 되는 시점은 주민등록 인구통계(행정자치부)와 유사하게 약 2016~17년 사이로 나타남
  - 통계청이 지난 '14년에 발표한 「장래인구추계 시도편(2013~2040)」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의 인구 역전시점은 약 2022~23년 사이로 나타남
- 경기도의 인구 노령화지수 전망은 '20년 85.7, '30년 146.3, '40년 225로 나타남

05 해외동향

해외 반부패(Anti-corruption) 정책 현황

최근 국내 대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공여 혐의 문제로 해당 기업이 미 해외부패방지법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반부패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

- OECD 뇌물방지협약은 국제상거래에서의 부패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노력*
  - OECD의 뇌물방지협약(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)은 국제상거래에서 기업들의 동등한 경쟁기회(a level playing-field)를 보장하기 위한 동기에서 출발
  - 국제상거래에서의 뇌물공여를 범죄로 규정하기로 한 최초의 국제적 합의로 국제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를 처벌하고 더 나아가 '공정한 국제경쟁의 장' 구축하고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범죄화할 것을 의무화함
-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(FCPA,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of 1977)**
  - 미국 또한 해외부패방지법을 통해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부패행위 모두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
  -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총 27개의 기업이 FCPA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4년간 3배 증가하였으며 기소된 27개의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약 25억 달러
  - 2016년 이스라엘 제약사 테바(Teva)에 약 5.2억 달러로 가장 많은 금전적 제재가 가해졌으며 2008년 독일계 다국적 기업인 Siemens에 역대 최고 금전적 제재금이 가해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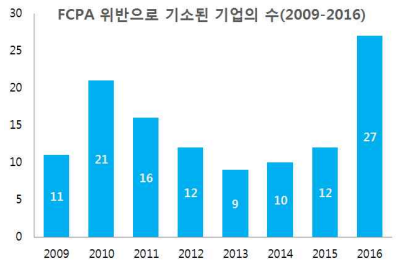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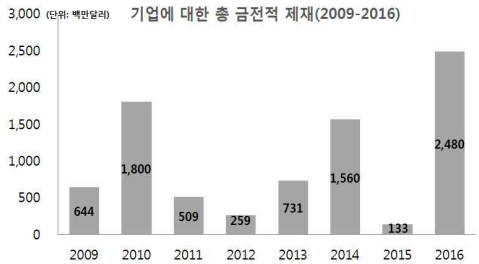

  - FCPA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공동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기업의 미국 내 법인 등의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와 미국기업의 한국에서의 부패행위가 FCPA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
- 영국의 뇌물규제법(Bribery Act)
  - 영국은 2010년 OECD의 권고로 뇌물규제법를 제정하여 반부패에 관한 세계적 흐름을 강화함
  - 영국의 뇌물규제법과 미국의 FCPA의 가장 큰 차이는 규제 대상이 FCPA는 뇌물 제공자로 한정하는 반면, 뇌물규제법은 뇌물제공자와 뇌물수수자를 모두 처벌 대상으로 한다는 점
  - 뇌물규제법 위반 시, 개인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둘 다 부과 가능하며 법인은 벌금이 부과(FCPA와 달리 벌금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지 않음)
- 한국 기업 및 정부에의 시사점
  -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(Corruption Perceptions Index)에서 2015년 한국은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전체 167개 조사대사국 중 37에 그쳤음
  -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국내 및 해외 기업의 부패행위를 규제하고 있고 최근 기소사례 중 대부분을 해외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제상거래활동비중이 높은 한국기업은 언제든 FCPA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
  - FCPA의 강력한 벌금 부과를 고려할 때***, 한국 기업 및 정부는 반부패 관련 해외 규제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사전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
  - 한국기업의 윤리경영 현황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구축현황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며, 기소사례에 대한 자료 수집과 분석 또한 이루어져야 함
  - 더불어 FCPA에 대한 기업의 인식 제고 및 부패방지에 대한 국내법 강화도 동반되어야 함****

*OECD(2011), 「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Related Documents」

**Shearman & Sterling(2017), 「FCPA Digest」 및 FCPAblog 웹사이트에서 인용

***FCPA 위반 시,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최고 2,500만 달러(회계규정 위반), 최고 200만 달러(반부패규정 위반)

****한국보건사회연구원(2013), 「해외 반부패 입법동향 및 대응방안 연구」